

제 안 설 명 서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영 주 시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5

제출년월일 : 2003.
제출자 : 영주시장

1. 개정이유

「제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지침」에 의한 읍면동 존치·이관사무의 조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부과징수사무의 위임근거중 동장을 삭제함 (안 제10조, 제66조제2항)
- 나.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개정되어 법률명칭을 일치시키고자함.(안 제37조제2항)
- 다.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중 읍·면을 삭제함 (안 제51조)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참고자료 : 덧붙임.

관련법령(발체) 1부. 끝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읍·면·동장”을 “읍·면장”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중 “시·읍·면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영주시농업소득조사위원회”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당해 시·읍·면안의 납세의무자”를 “당해 납세의무자”로 한다.

제66조제2항중 “읍·면·동장”을 “읍·면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영주시 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p>제10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 시세의 징수금 징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p>	<p>제10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읍·면장· </p>
<p>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생략)</p> <p>② 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반의 수요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p>	<p>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현행과 같음)</p> <p>②<u>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u>..... </p>
<p>제51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① 수입금액·농업소득금액·그 밖의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읍·면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p> <p>② 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당해 시·읍·면안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p>	<p>제51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① 영주시농업소득조사위원회..... 당해 납세의무자..... </p>

관 련 법 령(발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448호,1997.12.13>

第2條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自動車"라 함은 自動車管理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乘用自動車 및 乘合自動車を 말한다.
2. "旅客自動車運輸事業"이라 함은 旅客自動車運送事業·自動車貸與事業 및 旅客自動車터미널事業을 말한다.
3.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需要에 응하여 自動車を 사용하여 有償으로 旅客을 運送하는 사업을 말한다.
4. "自動車貸與事業"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需要에 응하여 有償으로 自動車を 貸與하는 사업을 말한다.
5. "旅客自動車터미널"이라 함은 道路의 路面 기타 一般交通에 사용되는 場所의에서 乘合自動車を 停留시키거나 旅客을 乘下車시키기 위하여 設置된 施設 및 場所를 말한다.
6. "旅客自動車터미널事業"이라 함은 旅客自動車터미널을 旅客自動車運送事業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附則 <제5448호,1997.12.13>

第1條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삭제<2000.12.30>

第3條 (다른 法律의 廢止) 다음 各號의 法律은 이를 각각 廢止한다.

1. 旅客自動車터미널法
2. 陸運振興法

第4條 (旅客自動車運輸事業에 관한 一般의 經過措置) 이 법 施行당시 종전의 自動車運輸事業法·旅客自動車터미널法 및 陸運振興法の 規定에 의하여 行政機關이 행한 처분 그밖의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각종 申告 그밖의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로 본다.

第5條 (旅客自動車運輸事業의 免許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법 施行당시 종전의 自動車運輸事業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自動車運送事業의 免許 또는 登錄을 받은 者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한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免許 또는 登錄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施行당시 종전의 自動車運輸事業法 第55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自動車貸與事業의 登錄을 한 者는 第29條의 規定에 의하여 自動車貸與事業의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第12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법 施行당시 다른 法律에서 종전의 自動車運輸事業法·旅客自動車터미널法 또는 陸運振興法이나 그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 2002.5.26 법률 제06731호]

第2條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5.26)

6

1. "貨物自動車"라 함은 自動車管理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貨物自動車 및 特殊自動車로서 建設交通部가 정하는 自動車を 말한다.
2.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이라 함은 貨物自動車運送事業 및 貨物自動車運送周旋事業을 말한다.
3.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이라 함은 他人의 需要에 응하여 貨物自動車を 사용하여 貨物を 有償으로 運送하는 事業을 말한다. 이 경우 화주가 화물자동차에 동승할 경우에 있어서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에 적재하기 부적합한 것으로 그 기준 및 대상차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貨物自動車運送周旋事業"이라 함은 他人의 需要에 응하여 有償으로 貨物運送契約을 仲介·代理하거나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을 經營하는 者의 貨物運送手段을 이용하여 자기의 名義와 計算으로 貨物を 運送하는 事業을 말한다.
5. "運送從事者"라 함은 貨物自動車の 運轉者, 貨物の 運送 또는 運送周旋에 관한 事務를 취급하는 事務員 및 이를 보조하는 補助員 기타 貨物自動車運送事業에 종사하는 者를 말한다.
6. "公營車庫地"라 함은 貨物自動車運送事業에 제공되는 車庫地로서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設置한 것을 말한다.

附則(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448호,1997.12.13>

第1條(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1條(다른 法律의 改正) 自動車運送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附則 第2條 및 第4條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第2條(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登錄에 관한 特例) ①1990年 6月 30日 이전까지는 第3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을 經營(중차의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長官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

②第4條第1項의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免許를 받을 수 없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基準은 다음 各號의 1과 같다.

1. 당해 事業計劃이 輸送需要와 輸送力供給에 적합할 것
2. 당해 事業計劃이 장기경영에 적합할 것
3. 당해 事業이 公익상 필요하며 또한 적절할 것
4. 建設交通部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第4條(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登錄에 관한 경과조치) ①旅客自動車運送事業法施行당시 종전의 自動車運送事業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免許를 받거나 登錄을 한 者와 附則 第2條의 規定에 의하여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免許를 얻은 者는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第3條第4項의 規定은 同 事業者에 대하여 1999年 6月 30日까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